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재정경제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와 관련한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관세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09호, 2025. 12. 23. 공포, 2025. 12. 23. 시행)됨에 따라,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19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제2항제4호 중 “관세사회(이하 “관세사회”라 한다)”를 “한국관세사회(이하 “한국관세사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관세사회”를 각각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관세사회 회칙)”을 “(한국관세사회 회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세사의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관세사회”를 각각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8조 전단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관세사회”를 “한국관세사회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관세사회회장”을 “한국관세사회회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의2 및 별
표 3의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의3(관세사자격심의·징계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		제5조의3(관세사자격심의·징계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관세사자격심의·징계위원 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,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~ 3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법 제21조에 따른 <u>관세사회</u> (이하 “관세사회”라 한다) 회 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 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		4. ----- <u>한국관세</u> <u>사회</u> (이하 “ <u>한국관세사회</u> ”라 <u>한다</u>) ----- ----- -----		
5. (생략)		5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략)	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21조(연수교육의 시간 등) ①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”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 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 한다.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 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 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 세사회가 정한다.		제21조(연수교육의 시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한</u> <u>국관세사회</u> -----.		

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2. (생략)

3.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

제21조의2(업무실적 보고) ① 관세사(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입액, 수입 건수, 공직퇴임 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③ (생략)

제22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한국
관세사회-----

제21조의2(업무실적 보고) ① ---

----- 한국관세사회-----
-----.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①

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관세사회</u>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. 4. (생략) ② (생략) 제23조(분쟁·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) ①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<u>관세사회</u>에 통관업분쟁·고충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·③ (생략) 제26조(<u>관세사회</u> 회칙) ① 법 제2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관세사의</u>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12. (생략) 제27조(총회) ① <u>관세사회</u>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·장소 및 의제를 7일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<u>관세사회</u>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23조(분쟁·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6조(<u>한국관세사회</u> 회칙) ① -----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 ----- 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제27조(총회) ①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③ (생 략) 제27조의2(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<u>관세사회</u>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·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<u>관세사회</u>가 정한다. 제28조(감독) 관세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매년 <u>관세사회</u>로 하여금 업무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<u>관세사회</u>에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고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 제28조의2(등록취소 등의 공개)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, 제20조에 따라 등록취소, 업무정지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취소등”이라 한다)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징계처분”이라 한다)을	③ (현행과 같음) 제27조의2(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. 제28조(감독) -----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 ----- <u>한국관세사회</u>----- ----- -----. -----. 제28조의2(등록취소 등의 공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.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「행정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다.

1. · 2. (생략)

제30조(업무의 위탁)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2조(징계의 건의) ① (생략)

② 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

----- 한국관세사회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한국관세사회-----

----- 한국관세사회-----

-----.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 한국관세사회-----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징계의 건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한국관세사회 -----

게 건의하여야 한다. 제35조(의결통고 및 집행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,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 또는 <u>관세사회회장</u>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-----. 제35조(의결통고 및 집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한국관세사회회장</u>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36조의2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u>
---	--

[별표 3] <신 설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
가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1호	30만원
나. 법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	법 제31조 제1항제3호	100만원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18